

제 1518 호
1990. 10. 10

발행인: 서울특별시장 고 건수
편집인: 공보관 유 천 수
전 화: 731-6111~3
인 쇄: 서울특별시 종합발간실
전 화: 735-3337

시 보

차 례

● 조 례

- 제2651호 서울특별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 3
- 제2652호 서울특별시주차장에대한시새과시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3
- 제2653호 서울특별시청소년자립지원기금조례중개정조례 3
- 제2654호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 4

● 예 규

- 제 528 호 서울특별시세리지관리및처분규정중개정규정 14

(이면계속)

영													
	문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서울특별시

1957

● 고 시	
제337호 광견병 예방주사 실시	16
● 공 고	
제544호 판인신조교부 및 재교부 공고	17
제545호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개정(안) 입법 예고	17
● 구 고 시	
제 17 호 도시계획사업(청담근린공원조성) 실시계획인가(강남)	18
제 19 호 도시계획사업(도로) 실시계획변경인가(중포)	20
제 24 호 도시계획사업(도로) 실시계획변경인가(성북)	22
제 25 호 도시계획시설계획공고(강동)	26
제 29 호 도시계획시설계획공고인가(강동)	29
제 73 호 도시계획시설(도로개설) 실시계획인가(중랑)	29
제 74 호 도시계획시설(도로개설) 실시계획인가(중랑)	30
제 78 호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취소(성북)	30
제118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지적승인(송파)	30
● 구 공 고	
제 84 호 판인재교부공고(강남)	31
● 사 령	

조 례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시세
조례중 개정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90. 10. 6

서울특별시시장 고 건 ㉔

●서울특별시조례제2651호

서울특별시세조례중 개정조례

서울특별시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조례 제2547호 서울특별시세
조례중 개정조례 부칙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도시계획세 납기에 관한 특례) 1990년
도·토지분 도시계획세의 납기는 제6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1월 16부터 11월30일까
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주차
장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
정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90. 10. 6

서울특별시시장 고 건 ㉔

●서울특별시조례제2652호

서울특별시주차장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주차장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

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중 “주차대수 40대
이상”을 각각 “주차대수 20대이상”으로 한
다.

제3조제2항중 “주차전용 부동산에 대하
여는 준공이후”를 “주차전용 부동산과 노면
주차장(1년간 주차장 수입금액이 당해토지
공시지가의 100분의 7이상인 경우에 한한
다)에대하여는 주차영업 개시일이후”로,
“주차신용 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
차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청소
년자립지원기금조례중개정 조례를 이에 공
포한다.

1990. 10. 6

서울특별시시장 고 건 ㉔

●서울특별시조례제2653호

서울특별시청소년자립지원기금
조 례 중 개 정 조 례

서울특별시청소년자립지원기금조례중 다
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
이 한다.

2. 청소년육성위원회위원·청소년지도위원
·독지가 또는 단체의 성금
3.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또는 기타
수입금.

제4조제2항중 “위원은 서울특별시장이 지
명하는 국장이 된다.”를 “위원은 서울특
별시·내무국장·재무국장·시민생활국장

<p>· 산업경제국장· 보건사회국장· 가정복지국장 및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학무국장 으로 한다"로 하고, 동조 제3항중 "부녀 청소년과장"을 "청소년과장"으로 한다.</p> <p>제6조제2항중 "년1회"를 "매년 12월에"로 하고, 동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p> <p>④회의는 재직위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제7조제2항중 "단기금융업법" 다음개 "신탁업법"을 삽입하고, 동조 제4항을 삭제한다.</p> <p>제8조제1항중 "소년·소녀가장과 그 세대원 및 구직·미진학청소년"을 소년·소녀가장과 그 세대원, 무직 또는 미진학청소년, 아동복지시설 수용아동 및 학교형태인 사회교육시설에 재학중인 청소년"으로 하고, 동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4. 기타지원금은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외에 위원회에서 자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지급한다.</p> <p>제9조제1항중 "구청소년대책위원회"를 "구청소년육성위원회"로 하고, 동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p>	<p>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대상자로 추천된 자중에서 지원대상자를 심사·선발하고 이를 해당 구청장에게 통보한다.</p> <p>부 칙</p> <p>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행정권한의임조례중개정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p> <p>1990. 10. 8</p> <p>서울특별시장 고 건 ㉔</p> <p>●서울특별시조례제2654호</p> <p>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p> <p>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5조제1항중 "동장"을 삭제한다.</p> <p>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제6조(재위임)구청장은 행정의 능률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인사무의 일부를 시장의 승인을 얻어 자치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소장, 동장 기타 소속기관의 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p>
<p>[별표]의 시민생활국관중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란의 제7호중 "미용제조업"을 "미용제조업·당구장업·체력단련장업"으로 하며, 동란중 제4호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p>	
<p>5. 오수정화시설·분뇨정화조. 축산폐수정화시설의 설치신고수리 및 준공검사</p>	<p>○폐기물관리법 제15조</p> <p>구 청 장</p>
<p>[별표]의 시민생활국관에 제8호 내지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8. 직장체육진흥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제도</p>	<p>○국민체육진흥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7항</p> <p>구 청 장</p>

9. 직장운동경기부 및 체육동호인 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도	○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6항	구 청 장
10. 등록체육시설업(종합체육시설업에 한함)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등록 및 등록변경 나. 사업계획 승인, 승인사항 변경승인 및 승인취소 다. 양도, 양수, 법인합병, 휴업, 폐업신고의 수리 라. 시정명령 마. 등록취소, 영업의 폐쇄 또는 정지명령 바. 정문 사. 이용료, 관람료의 신고, 변경 신고수리 아. 보고, 검사등 자. 등록사항 보고 및 신고용보 차. 과태료의 부과, 징수	○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 동법 제7조 ○ 동법 제10조 ○ 동법 제11조 ○ 동법 제12조 ○ 동법 제13조 ○ 동법 제18조 ○ 동법 제20조 ○ 동법 제21조 ○ 동법 제24조	구 청 장
[별표]의 보건사회국관제 제3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관의 제47호 본문 중 "근로자 1,000명 미만 사업장의 노동업무(2개구 이상에 걸치는 사업장 제외)중 다음의 사항"을 "2개구 이상에 걸치는 사업장을 제외한 사업장의 다음의 노동업무"로 하며, 보건사회국의 제37호 내지 제40호 및 제46호의 근거법령관제 "직업안정법"을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 법률"로 한다.		
35. 보장구 제조업, 수리업 허가 및 허가취소등	○ 장애인복지법 제50조 및 제51조	구 청 장
[별표]의 보건사회국관제 제52호 내지 제5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2. 소독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허가 및 허가사항 변경허가 나. 소독 실적보고 징수 다. 휴업, 재개업, 폐업신고의 수리	○ 전염병예방법 제40조의 3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의 4 ○ 동법시행규칙 제20조의 7 ○ 동법 제40조의 4	구 청 장

<p>라. 허가취소, 영업정지명령 및 시정명령</p>	<p>○ 동법 제40조의 8</p>	
<p>53. 이·미용사 면허 및 면허증 교부</p>	<p>○ 공중위생법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p>	<p>구 청 장</p>
<p>54. 조리사 면허 및 면허증 교부</p>	<p>○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6조</p>	<p>구 청 장</p>
<p>55. 안마사 자격인정 및 자격증 교부</p>	<p>○ 의료법 제61조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3조</p>	<p>구 청 장</p>
<p>56. 간호조무사 자격인정 및 자격증 교부등</p>	<p>○ 의료법 제58조 및 간호보조원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8조, 제10조 및 제11조</p>	<p>구 청 장</p>
<p>[별표]의 가정복지국란 중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란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2. 아동복지시설의 설치인가 및 법령 위반자에 대한 조치(경고, 시설의 장 교체요구, 사업정지 명령, 인가 또는 위탁의 취소, 시설폐쇄)</p>	<p>○ 아동복지법 제20조 및 제26조</p>	<p>구 청 장</p>
<p>6. 체육부소관 청소년관계 비영리 법인의 지도감독에 관한 다음의 사무</p>	<p>○ 민법 제32조 및 행정관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4조</p>	<p>구 청 장</p>
<p>가. 정관변경허가(목적, 명칭 및 구호를 달리하는 위치변경은 제외)</p>	<p>○ 체육부소관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0조</p>	
<p>나.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등의 보고정수</p>	<p>○ 동규칙 제13조</p>	
<p>다. 특수사업 또는 수익사업의 승인등(국제교류 및 2개구 이상에 걸치는 사업은 제외)</p>	<p>○ 동규칙 제14조</p>	
<p>라. 재산취득신고수리</p>	<p>○ 동규칙 제15조</p>	
<p>다. 기본재산의 처분승인</p>	<p>○ 동규칙 제16조</p>	
<p>바. 법인사무의 검사·감독</p>	<p>○ 동규칙 제19조</p>	
<p>[별표]의 산업경제국란중 제1호, 제14호, 제16호, 제19호, 제21호, 제23호, 제24호, 제27호, 제54호 및 제9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란중 제18호, 제20호 및 제40호를 각각 삭제한다.</p>		

<p>1. 재량기관대입 또는 재량중명업의 등록, 등록사항 변경등록, 등록취소 및 사업중지명령</p>	<p>○ 계량법 제15조 및 제37조</p>	<p>구 청 장</p>
<p>14. 동물병원의 개설신고, 신고사항 변경신고, 폐업신고의 수리와 업무정지 명령</p>	<p>○ 수의사법 제17조 제3항, 제18조 및 제34조</p>	<p>구 청 장</p>
<p>16. 종축업 등록, 영업양도, 입대신고, 등록사항 변경신고, 폐업, 휴업, 재개업의 신고수리 및 지도감독.</p>	<p>○ 축산법 제13조 제1항, 제3항, 제5항, 제14조 및 제15조.</p>	<p>구 청 장</p>
<p>19. 동물약품 도매상허가 및 허가사항연계허가</p>	<p>○ 약사법 제35조 제2항 및 동물약품등록규칙 제10조 및 제12조</p>	<p>구 청 장</p>
<p>21. 농약관리법 등록, 폐업, 휴업, 재개업의 신고수리, 경고, 영업정지명령 및 등록취소</p>	<p>○ 농약관리법 제10조 및 제13조</p>	<p>구 청 장</p>
<p>23. 단미사료제조업등록, 시설변경, 양도, 입대, 폐업, 휴업, 재개업, 신고의 수리</p>	<p>○ 사료관리법 제3조 제2항 제5항 제6항.</p>	<p>구 청 장</p>
<p>24. 종묘상등록, 등록취소, 업무의 제한 또는 정지명령</p>	<p>○ 종묘관리법 제3조 제2항 및 제15조</p>	<p>구 청 장</p>
<p>27. 병세업등록, 폐업, 휴업, 재개업의 신고수리, 경고, 영업정지명령 및 등록취소</p>	<p>○ 농약관리법 제11조 및 제13조</p>	<p>구 청 장</p>
<p>54. 염(합수)제조허가, 허가취소 및 염제조정지명령</p>	<p>○ 염관리법 제3조 및 제10조</p>	<p>구 청 장</p>
<p>90. 사료판대업신고, 신고사항변경 신고의 수리, 경고, 영업정지 명령, 과징금의 부과, 징수 및 보고, 검사등 감독</p>	<p>○ 사료관리법 제10조, 제18조 및 제21조</p>	<p>구 청 장</p>
<p>[별표]의 산업경제국관에 제93호 내지 제9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93. 석유판대업자(주유소, 판매소에 한함)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징수</p>	<p>○ 석유사업법 제28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6호</p>	<p>구 청 장</p>

<p>94. 에너지 이용합리화법(제10조 제1항, 제13조제2항, 제22조 제30조 제2항, 제31조 제1항, 제36조 제3항에 한함)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징수</p> <p>95. 도시가스시설 시공자 등록, 검사 및 과태료의 부과. 징수</p> <p>96. 액화석유가스시설시공자등록, 보고검사 및 과태료의 부과. 징수</p>	<p>○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84조.</p> <p>○ 도시가스사업법 제12조제4항, 제42조 및 제54조제1항 제2항</p> <p>○ 액화석유가스의 안전및 사업관리법 제15조제4항, 제35조 및 제48조제1항, 제2항</p>	<p>구 청 장</p> <p>구 청 장</p> <p>구 청 장</p>
<p>[별표]의 문화관광국관에 제19호 내지 제2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19. 정원초과입장허가</p> <p>20. 종교의식용품인 사설의 증명</p>	<p>○ 공연법 제22조 제2호</p> <p>○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16호, 동법시행령 제30조 제2항 제1호 및 행정권한의 위임및 위탁에 관한규정 제49조 제14항 제1호</p>	<p>구 청 장</p> <p>구 청 장</p>
<p>[별표]의 도시계획국관의 제7호중 "(다만, 공업지역 : 5,000㎡, 녹지지역 : 3,300㎡, 기타지역:1,650㎡이하에 한함)"을 삭제하고 동관의 제8호 본문중 "본청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은 제외"를 "본청에서 직접 시행하거나 그 기능의 범위가 2이상의 구역에 걸치는 사업은 제외"로 하며, 동호 파목중 "관망탑"을 "관망탑,수도(수원지 제외), 유수지, 공공직업훈련시설, 방화설비"로 한다.</p>		
<p>[별표]의 주택국관에 제22호 내지 제2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22.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등록탈소 및 영업정지명령</p> <p>23.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 개선 지구 지정을 위한 조사</p> <p>24. 주민의견의 정취 및 동의서 정취</p>	<p>○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 제9조의2, 제45조 제1호</p> <p>○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 개선에유위한임시조치법 제3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제3항</p> <p>○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에유위한임시조치법 제3조제2항, 제4조 및 동법시행령제4조</p> <p>○ 도시계획법 제16조의2제2항</p>	<p>구 청 장</p> <p>구 청 장</p> <p>구 청 장</p>

25. 주거환경 개선계획의 수립, 협의, 주민의견 청취등	○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 율위한임시조치법 제6조	구 청 장
26.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	○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 율위한임시조치법 제7조제1항	구 청 장
27. 주거환경개선지구안에서의 건축 허가 또는 건축신고수리 및 건축 물에 대한 준공검사 필증 교부	○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 율위한임시조치법 제9조제3항 및 제4항	구 청 장
28. 주거환경개선지구안에서의 건축 제한	○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 율위한임시조치법 제10조제3항	구 청 장
[별표]의 도로국면에 제6호 내지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도시계획사업시행자가 시장인 경우의 도로사업의 손실보상	○ 도시계획법 제23조제1항	구 청 장
7. 전문건설업면허판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신규면허 제외)		구 청 장
가. 면허대장(정부분)의 작성, 보관	○ 건설업법 제6조, 제57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53조제1항 제1호	
나. 권허갱신	○ 동법제6조 4항	
다. 변경신고또는 착공신고의수리	○ 동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	
라. 건설공사착공신고의 통보	○ 동법 제11조제3항	
마. 양도·법인합병·상속의 인가	○ 동법제13조	
바. 도급한도액의 결정	○ 동법 제18조제1항	
사. 실태조사	○ 동법 제41조	
아. 시정명령 및 시정지시	○ 동법 제49조	
자. 영업정지명령 및 과징금의 부과·징수	○ 동법 제50조	
차. 면허취소 및 영업정지명령	○ 동법 제52조	
파. 청문	○ 동법 제54조	
카. 과징금부과대상자 고발	○ 동법 제64조	
타. 과태료의 부과·징수	○ 동법 제67조	
하. 실제확인	○ 동법시행규칙 제6조	
거. 면허증 및 면허수첩교부 및 재교부	○ 동법시행규칙 제9조	

<p>8. 중기조종사면허 및 면허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p> <p>가. 면허</p> <p>나. 면허의 취소·정지</p> <p>다. 중기조종사의 적성검사</p> <p>라. 신상변동신고수리</p> <p>마. 과태료의 부과·징수</p> <p>바. 면허증재교부</p> <p>사. 면허대장관리등</p> <p>9. 중기등록에 관한 다음의 사무</p> <p>가. 신규등록</p> <p>나. 등록사항 변경(중기소재지 변경의)의 신고수리</p> <p>다. 등록이관신고수리</p> <p>라. 등록의 갱정</p> <p>마. 등록말소</p> <p>바. 등록원부 비치·관리 및 등·초본 교부, 열람</p> <p>사. 저당권설정등록 및 등록사항 변경신고, 말소신고의 수리</p> <p>아. 저당중기압류, 가치분등의 등록</p> <p>자. 과태료의 부과·징수</p> <p>차. 등록증의 재교부</p>	<p>○ 중기관리법 제19조</p> <p>○ 동법 제21조</p> <p>○ 동법 제22조</p> <p>○ 동법 제23조</p> <p>○ 동법 제35조의2 제1항제8호</p> <p>○ 동법시행규칙 제42조</p> <p>○ 동법시행규칙 제43조</p> <p>○ 중기관리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p> <p>○ 동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p> <p>○ 동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p> <p>○ 동법시행령 제10조</p> <p>○ 동법 제5조</p> <p>○ 동법 제7조</p> <p>○ 중기저당법 제5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중기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p> <p>○ 중기저당법 제5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p> <p>○ 중기관리법 제35조의2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p> <p>○ 중기관리법시행규칙 제7조</p>	<p>구 청 장</p> <p>자동차관리 사업소장</p>
<p>10. 중기등록번호표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p> <p>가. 중기등록 번호표봉인, 번호표재부착 및 번호표부착등의 의뢰</p> <p>나. 납납받은 중기등록번호표의 폐기</p>	<p>○ 중기관리법 제8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의2, 제15조의3</p> <p>○ 동법제8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15조의4</p>	<p>자동차관리 사업소장</p>

<p>다. 중기등록번호표의 각자명령등 라. 파태표의 부과·징수</p> <p>11. 각자등대행자지정 및 지정자관리 에 관한 다음의 사무</p> <p>가. 각자등대행자지정 나. 지정사항변경신고수리 다. 각자등시행지시 라. 지정취소</p> <p>12. 중기검사에 관한 다음의 사무</p> <p>가. 신규등록검사(운행상황기록)중 교부 및 재교부 나. 수시검사 명령 다. 경비명령 및 검사대행자에 대한 통지 라. 정기점검기록대장의 보존관리 마. 정기점검의 연기 바. 운행상황신고 수리 사. 파태표의 부과·징수</p>	<p>○ 동법 제10조 ○ 동법제35조의2제1항 제4호</p> <p>○ 중기관리법 제8조제2항 ○ 동법시행규칙 제12조 ○ 동법시행규칙 제15조제1항 ○ 동법시행규칙 제17조</p> <p>○ 중기관리법 제12조제3항 및 동 법시행규칙 제20조의 2 제23조 ○ 동법시행규칙 제25조 ○ 동법시행규칙 제26조</p> <p>○ 동법시행규칙 제27조의5 제2항 ○ 동법시행규칙 제27조의 6 ○ 동법 제12조 제6항 ○ 동법 제35조의2제1항제5호 및 제6호</p>	<p>자동차관리 사업소장</p> <p>자동차관리 사업소장</p>
<p>[별표]의 환경녹지국란에 제7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79. 산업폐기물(재생이용용)처리 신고 수리</p>	<p>○ 폐기물관리법 제23조제2항</p>	<p>구 청 장</p>
<p>[별표]의 교통국란의 제56호 본문중 "6호"를 "제6호중 가목 및 다목"으로하고, 제14호의 수 입기관란중 "동강"을 "구청장"으로 하며, 교통국란중 제15호 및 제37호를 각각 삭제한다.</p>		
<p>[별표]의 교통국란중 제62호를 다음과 같이한다.</p>		
<p>62. 자동차정류장에 관한 다음의 사무</p> <p>가. 정류장공사 시행인가. 변경인가 및 인가신청기간연장 나. 정류장공사 완성기간의 지정, 완성검사, 합격처분 및 완성기 간의 연상 다. 정류장유지, 관리에 관한 지도 감독 및 시정명령</p>	<p>○ 자동차정류장법 제7조</p> <p>○ 동법 제8조</p> <p>○ 동법 제14조</p>	<p>구 청 장</p>

<p>라. 정류장명칭변경신고의 수리(트럭정류장에 한함)</p> <p>마. 정류장의 위치 및 규모변경 인가등(트럭정류장에 한함)</p> <p>바. 정류장의 구조 및 설비변경 인가등</p> <p>사. 사업개선명령</p> <p>아. 사업의 폐지 및 휴지허가, 법인의 해산결의 또는 해산을 위한 동의에 대한 인가(트럭정류장에 한함)</p>	<p>○ 동법 제17조</p> <p>○ 동법 제18조</p> <p>○ 동법 제19조</p> <p>○ 동법 제20조</p> <p>○ 동법 제24조</p>	
<p>[별표]의 교통국란에 제65호 내지 제6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65.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자에 대한 사업정지명령(다만,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의 처분에관한규칙 별표2의 위반내용란 중 제1호, 제2호, 제3호, 제3의2호, 제15호, 제17호, 제41호, 제42호, 제43호, 제44호, 제46호, 제47호, 제55호, 제59호 해당 행위 제외)</p>	<p>○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p>	<p>구 청 장</p>
<p>66.자동차운수사업법 제71조(자동차표시)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p>	<p>○ 자동차운수사업법 제71조 및 제75조 제1항·제1호</p>	<p>구 청 장</p>
<p>[별표]의 하수국란중 제1호 내지 제10호, 제12호, 내지 제15호, 제17호, 및 제4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란중 제16호를 삭제하며, 제45호의 수입기관란중 "한강관리사업소"를 "하수처리장장"으로 한다.</p>		
<p>1. 공공하수도 설치인가(간선하수도 및 2이상의 구에 걸치는 하수도와 종말처리장 제외)</p>	<p>○ 하수도법 제4조,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p>	<p>구 청 장</p>
<p>2. 공공하수도의 공사(간선하수도 및 2이상의 구에 걸치는 하수도와 종말처리장 제외)</p>	<p>○ 하수도법 제8조</p>	<p>구 청 장</p>

<p>3. 공공하수도의 유지·관리. 다만, 하수처리장장은 한강본류상의 차집관거 및 처리구역내의 차집관거시설에 관한 사항에 한함.</p>	<p>○ 하수도법 제8조</p>	<p>구 청 장 및 하수처리장장</p>
<p>4. 공공하수도의 사용개시 공고(종말처리장 및 한강본류상의 차집관거 관련사항 제외)</p>	<p>○ 하수도법 제9조</p>	<p>구 청 장</p>
<p>5. 점용공작물에 관한 공사동시 시행</p>	<p>○ 하수도법 제10조</p>	<p>구 청 장</p>
<p>6. 공공하수도 공사원인자에 대한 공사 시행명령. 다만, 하수처리장장은 종말처리장 및 한강본류상의 차집관거관련사항에 한함.</p>	<p>○ 하수도법 제12조</p>	<p>구 청 장 및 하수처리장장</p>
<p>7. 비관리청 시행 공공하수도 공사허가(한강 본류상의 차집관거 관련사항 제외)</p>	<p>○ 하수도법 제13조</p>	<p>구 청 장</p>
<p>8. 공공하수도의 수선. 유지명령. 다만 하수처리장장은 한강 본류상의 차집관거관련사항에 한함.</p>	<p>○ 하수도법 제14조</p>	<p>구 청 장 및 하수처리장장</p>
<p>9. 공공하수도대장 작성 및 보관. 다만, 하수처리장장은 한강 본류상의 차집관거 관리사항에 한함.</p>	<p>○ 하수도법 제19조</p>	<p>구 청 장 및 하수처리장장</p>
<p>10. 공공하수도 점용허가. 다만, 하수처리장장은 한강본류상의 차집관거 관련사항에 한함.</p>	<p>○ 하수도법 제20조</p>	<p>구 청 장</p>
<p>12. 타인 토지에의 출입등</p>	<p>○ 하수도법 제23조</p>	<p>구 청 장</p>
<p>13. 배수설비의 설치신고수리. 다만, 하수처리장장은 한강본류상의 차집관거 관련사항에 한함.</p>	<p>○ 하수도법 제24조제2항</p>	<p>구 청 장 및 하수처리장장</p>
<p>14. 재해시설 설치명령. 다만, 하수처리장장은 한강본류상의 차집관거 관련사항에 한함.</p>	<p>○ 하수도법 제26조</p>	<p>구 청 장 및 하수처리장장</p>
<p>15. 배수설비 및 재해시설 검사. 다만, 하수처리장장은 한강본류상의 차집관거관련사항에 한함.</p>	<p>○ 하수도법 제27조</p>	<p>구 청 장 및 하수처리장장</p>

17.법령 또는 처분위반에 대한 감독 및 허가취소등. 다만, 하수처리장은 반강분류상의 차질방지 관련 사항에 한함.	○ 하수도법 제37조	구 청 장 및 하수처리장장
44.방류수의 수질검사. 다만, 하수처리장장은 종말처리장에 한함.	○ 하수도법 제16조	구 청 장 및 하수처리장장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예 규

●서울특별시예규제528호

서울특별시체미지관리및처분규정중개정규정

서울특별시체미지관리및처분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1항 내지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4항을 신설한다.

제13조(대부기간 및 대부료) ①토지에 대하여는 대부할 수 없다. 다만, 기존 건물(허가건물 또는 판공공부상에 '82.4.8이전 무허가건물로 등재되어 있는 건물을 말한다)이 점유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대부를 할 경우의 대부기간은 토지를 점유하는 기간으로 하되, 점유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때에는 1년 단위로 계약을 하여야한다. 또한 토지를 이규정에 의하여 대부받지 않고 점유하거나 무단으로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연상금을 징수한다.

③년간 대부료율은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대부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제8조 제1항 단서 제1호내지 제9호에 의한 토지
2. 학교법인이 직접 교육 목적에 사용하는 토지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토지를 대부 받은자가 대부료를 납부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부 계약을 해제하거나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하여 체납처분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규정은 1990년 1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이미 계약된 토지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 제1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서울특별시예규제471호(1985.11.29)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0.12.31까지 주거용 사유건물이 점유한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경우에는 대부기간 및 대부료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신 구조문 대 조 표

현	행	개	정	개	정	사	유
제13조(대부기간 및 대부료)							
①	점유토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때에는 대부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①	토지에 대하여는 대부할 수 없다. 다만, 기존 건물(허가 건물 또는 '82.4.8 이전 무허가 건물로 등재되어 있는 건물을 말한다)이 점유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①	채비지 무단점유사용자에 대하여 매각시 1년분액 대해서만 대부료를 징수토록되어 있어 장기 점유자에 대한 대부료 징수가 불가하여 무단점유자들에게 대한 대부료 징수가 불가하여 무단점유자들의 채비지 매수기피현상이 현저한바 점유하는 기간동안 대부료를 징수토록 개정함으로써 채비지 매각을 촉진하여 구획정리사업을 조기 마무리코자 함.		
②	대부기간은 토지를 점유하는 자간으로 하되 점유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때에는 1년으로 한다. 또한 이미 점유했던 기간에 의하여 대부기간은 소급적용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대부할 할 경우의 대부기간은 토지를 점유하는 기간으로 하되 점유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때에는 1년단위로 계약을 하여야 한다. 또한 토지등 이 규정에 의하여 대부받지 않고 점유하거나 무단으로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징수한다.				
③	1년대부료율은 토지가격의 10%로 한다. 대부료는 매매계약 체결시 일괄징수 한다. 다만, 다음의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8조 제1항 단서 제출 내지 9호에 의한 토지	③	년간대부료율은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현	행	개	정	개	정	사	유						
2. 건물이 점유된 200m이하의 토지	3. 학교법인이 직접교육목적에 사용하는 토지	④(신 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1990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이미 계약된 토지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 신 설	제1조 이 규정은 1990년 1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 ----- ----- -----	② 제1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예규 제471호(1985.11.29)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0.12.31까지 주거용사유 건물이 점유한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경우에는 대부기간 및 대부료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고 시

●서울특별시고시제337호






광견병 예방주사 실시

다음과 같이 광견병 예방주사를 실시하고자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1990.10

서울특별시장

- 1.목적 :광견병의 발생과 전파를 막기 위한.
- 2.지역 :서울특별시 전역
- 3.대상 :우리시에서 기르는 모든 개(3개월령 이상)
- 4.장소 :인근 가축병원
- 5.기간 *90.10.24-11.14
- 6.기타:위 기간중 예방주사를 접종하지 아니한 개에 대하여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류, 살처분,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있으며 개 주인은 동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됩니다.

공 고		1990. 10. 8 서울특별시청		
◎서울특별시공고제544호 관인신조교부및재교부공고 우리시 "구로구청장"의 3개관인을 서울특별시 관인규칙 제5조 규정에 의거 신조 교부 및 재교부함을 동규칙 제8조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1. 사용개시 및 폐기일자 : 1990년 10월 15일 2. 관인 신조교부 및 재교부내역		
구분	승 인 내 역			
인 영				
공인명	구로구청장인(지적사무용-인증기용)			
구분	신 규	폐 기	신 규	폐 기
인 영				
공인명	구로구청장인 (건축물대장용-인증기용)		구로구청장인 (호적등초본용-인증기용)	
◎서울특별시공고제545호 서울특별시건축조례개정(안)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건축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알려 미리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서울특별시 법제사무처리 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0. 10. 10 서울특별시청 - 다 음 -		2. 취 지 : 건축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13055호, '90. 7. 16) 및 민원편의도모를 위한 불합리한 건축규제사항의 조정 3. 주요내용 : 별첨 4.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990. 10. 30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16절지를 세워서 작성)를 서울특별시청(참조: 건축지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1.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개정 조례(안)				

조 해 개 정 (안)

(개정 사유)

- 1990. 7. 16.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된 사항 제정 (개정내용 및 효과)
- 지연내 아파트형 공장의 건축규모(연면적) 제정

지 역	시행령 개정(영 제66조제2항)		조례제정(안)	개 정 방 향 및 효 과
	중 전	현 행		
일반주거지역	5,000㎡이하	○공장의 규모는 용도지역별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함	5,000㎡이하	○중전 시행령 범위까지 제정 ○아파트형 공장 건축축진유도
준주거지역	7,500㎡이하		7,500㎡이하	
근린상업지역	10,000㎡이하		10,000㎡이하	

○ 상업지역안에서 공동주택 건축시 개구부가 향하는 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이격거리 제정

지 역	시행령개정(영제90조제3호 가목)		조례개정(안)	개 정 방 향 및 효 과
	중 전	현 행		
상업지역 (중심, 일반, 근린)	건축물 높이의 0.5배 이상	○건축물 높이의 0.25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정함	건축물 높이의 0.25배 이상	○조례위임범위까지 제정 ○공동주택축진 유도 및 도심 공동화현상방지

구 고 시

◎강남구고서제17호

도시계획사업(청담근린공원조성) 실시계획인가

1. 건설부고시 제545호('90. 8. 24)로 도시계획시설(청담근린공원)조성계획 결정되고 강남구고시 제70호('90. 9. 7)로 지적승인

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66의 7필지 청담근린공원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5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6조1항, 같은령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법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1990. 9. 10
강남구청장
가. 도시계획사업(청담근린공원조성)실시계획인가조서: 별첨
나. 관계도서는 강남구청공원능지과(510-139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시 설 조 서								
(단위 : ㎡)								
시설구분	번 호	시 설 명	위 치	부지면적 (㎡)	규모	건축면적		비 고
						바닥면적	연면적	
	총 계			59,347		667	1,247	건폐율 1.1%
시설면적				14,655		667		시설율 24.7%
도로 및 광 장		도 로		2,365				
	1-1	광 장	66, 66의 4, 6	202				
	1-2	"	66의 7	2,970				(6)
	1-3	"	66의 3	382				(13)
	1-4	"	66의 1, 2, 5	2,968				(16)
	1-5	"	66의 3	320				(15)
	1-6	"	66, 66의 4	463				
조정시설	2-1	헬 터	66의 3, 5		1개소	16	16	(1-3)
	2-2	"	66의 1		"	"	"	"
	2-3	"	66의 3		"	"	"	"
	2-4	"	66의 3		"	"	"	"
	3-1	파 고 라	66의 3		"	18	18	(12)
	3-2	"	66의 3		"	30	30	"
	3-3	"	66의 2		"	28	28	(1-3)
	4	잔 디 광 장	66의 3	990				
5	잔디마운딩	66의 7	1,188					
휴양시설	6	노 인 정	66	131		131	131	벽돌조 1층
	7	벤 치	전 지역		42개소			
	8	임간휴게소	66	45				
유회시설	9	늘 이 터	66	180				조합놀이대
운동시설	10-1	체력단련장	66의 3	163				체력단련시설
	10-2	"	66의 3	156				"
	11	배드민턴장	66의 1, 3, 5	560				(3-1, 2)
	12	다목적운동장	66의 3	360				
교양시설	13	청소년회관	66의 2, 3	313		313	826	철근콘크리트조2층
	14	명 상 의 숲	66의 3	832				시비, 조각
편의시설	15	팔 각 정	66, 66의 4	67		67	134	한식기와 2층
	16	약 수 터	66의 3		1개소	16	16	셀터2동
	17	음 수 정	전 지역		3개소			
관리시설	18	휴 지 통	전 지역		22개소			
기 타		녹 지	전 지역	44,692				

도 로 조 서									
등 급	류 별	번 호	(㎡) 폭원	(㎡) 연 장	(㎡) 면 적	기 능	기 점	총 점	비 고
총 계					2,365				
중 로	1 류	1	4	96	384	진입도로	66외 4	66	
	소 계			96	384				
소 로	1 류	1	2	108	216	연결도로	66외 3	66	
		2	2	72	144	"	66외 3	66외 3	
		3	2	156	312	"	66외 3	66외 3	
		4	2	14	28	"	66외 3	66외 3	
		5	2	264	528	"	66외 5	66	
	소 계			614	1,228				
산책로		1	1.5	72	108	산책로	66외 7	66	
		2	1.5	156	234	"	66외 3	66	
		3	1.5	84	126	"	66외 3	66외 3	
		4	1.5	10	15	"	66외 3	66	
		5	1.5	180	270	"	66	66외 3	
	소 계			502	753				

◎종로구고시제19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변경인가

1. 건설부고시 제432호('83. 7. 1)로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 및 지적고시되었고 종로구공고 제20호('88. 7. 9)로 실시계획 공람 공고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633호('88. 7. 26)로 실시계획인가권바 있는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변경인가하였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종로구청 토목과 및 건설관리과에 비치하고 토지 및 건물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90. 9
종 로 구 청 장

가. 사업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사업(도로)시행변경인가

나. 사업 개요							
사업시행지	사업의 명칭	규모	사업시행자	변경내용			
연건동195-11 ~인의동8-2간	연지동-전 동대부고간 도로개설공사	도로개설 B=6m L=390m	종로구청장	○사업시행자 변경 당초-서울특별시청 (종로구청장) 변경-종로구청장 ○지적고시 연장상이 당초-400m 변경-390m			
다. 사업의 착수, 완공예정일: 인가일로부터 30일 이내 착수, '91. 12. 31 준공예정 라. 수용 또는 수용할 토지,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							
세: 변경없음(생략) 마.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3항의 관계인의 주소, 성명: 별첨 "토지 및 건물조서"							
토 지 조 서							
번호	지 번	지목	지적 ㎡	편입 ㎡	소유자 주소 성명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관계자 주소 성명		
1	효제동22-5	대지	78.5	78.5	효제동 22-3 양금남	소유권이전합구권가등기	
					용산구청과동3가111-9 김용상		
					효제동 22-3 강경숙		
					없 음		
					효제동 22-3 김원영		
					없 음		
					없 음		
					효제동 22-3 김지선		
					전지동 111 중소기업은행	근저당권설정	
					효제동 22-3 김원진		
2	효제동23-4	대지	8.2	8.2	없 음		
					상 동(양금남의 1인)		
					없 음		
건 물 조 서							
번호	건물소재지	건물종류	구조	건물 총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주소 성명	소유권이외 의 권리명세
						관계인 주소 성명	
1	효제동22-3	주택	목조도단층	34.3	34.3	경기도 김포군 대곶면 대명리 30A 김정홍	
						없 음	
						없 음	

<p>◎성북구고시제24호</p> <p>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변경인가</p> <p>1. 성북구고시 제25호('89. 12. 29)로 도시 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 인가고시한 정릉 동 236일대 도로확장공사의 변경사항을 도 시계획법 제25조, 26조 및 같은법 시행령</p>		<p>제26조, 27조에 의거 도시계획사업(도로) 실시계획 변경인가하고 이를 고시합니다.</p> <p>2. 관계도서는 성북구청, 토목과와 건설관리 과에 비치하고 토지건물 소유자와 이해관 계인에게 보입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1990. 10 성 북 구 청 장</p>
고 시 내 용	당 초	변 경
사 업 시 행 지	정릉동 254-76 236-940	변 경 없 음
사 업 의 종 류 및 명 칭	정릉동 236일대 도로확장공사	"
사 업 의 구 모	도로폭: 6미터, 연장340미터	도로폭: 6-8미터, 연장: 340미터
사 업 시 행 자	성 북 구 청 장	변 경 없 음
사업의착수및준공예정일	'90. 1 - '90. 12. 31	'90. 1 - '91. 12. 31
수용또는사용할토지,건물 의소재지,지번,지목및 소유권이의의권리명세	별 지 작 성	별 지 작 성 (별첨)
토지및건물의소유자와 토지수용법제4조3항의 관계인주소·성명	별 지 작 성	별 지 작 성 (별첨)
위치도및계획평면도	생 락	생 락
<p>따로붙임: 토지 및 건물조서(생략)</p>		

토 지 조 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입 석 상 용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 리의 종류 및 내용	
1	정봉동 258-4	대		17		한국은행	중구 남대문로 3가 110				
2	258-5	대		3		"	"				
3	976-4	구		80		국					
4	976-16	구		215		국					
5	254-376	대		9		남궁창욱	정봉동 254-1				
6	-377	대		23		홍갑표	" 254-344				
7	-378	대		33		최병태	" 254-264				
8	-379	대		27		김상준	" 254-265				
9	-380	대		26		최병길	" 산 16				
10	-381	대		25		장성필	" 254-267				
11	-382	대		8		김재택	" 254-2				
12	-383	대		27		정진수	" -11				
13	-384	대		7		김영창	" -3				
14	-259	대		56		한국은행	중구 남대문로 3가 110				
15	-250	대		43		"	"				
16	976-102	대		20		국					
17	258-43	대		13		한국은행	중구 남대문로 3가 110				
18	976-103	구		42		국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실제이용 상황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 의의권 의 종류 및 내용	소유권 의의권 의 종류 및 내용		
19	정릉동 258-44	대		7㎡		한국은행	중구 남대문로3가 110						
20	976-104	구		52		국							
21	-17	구		36		국							
22	258-46	대		12		김수인	정릉동 202-38						
23	-45	대		1		김수인외2인	"	김정수 안세준	202-38 254-77				
24	-47	도		65		한국은행	중구 남대문로3가 110						
25	-51	대		23		"	"						
26	254-390	대		2		문태호	정릉동 254-214						
27	-391	대		1		박헌봉	254-212						
28	-392	대		2		"	"						
29	-393	대		4		곽성용	-211						
30	-394	대		9		박남필	-206						

물 건 조 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실제이용 상황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 의의권 의 종류 및 내용	소유권 의의권 의 종류 및 내용		
1	정릉동 254-1		연와조 세멘기와	4㎡		남궁창욱	정릉동 254-1						
2	-344		"	10		홍갑표	254-344						
3	-264		세멘투블 세멘기와	1		최병태	254-264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 조 및 규격	수량	실제이용 상 황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4	정릉동 254-265		과장실, 대문	1식		최병태	정릉동 254-264			
			담장, 새내기	5㎡		김상준	-265			
5	-266	/	담장	1식		"	"			
			새내기, 물의문	2		최병결	산16			
6	-267		담장, 대문	1식		"	"			
			담장, 새내기	12		장성필	254-267			
7	-2		담장	1식		"	"			
			철대문	1식		김재백	-2			
8	-11		"	1식				정진수	-11	
9	-3		"	1식				김영창	254-3	
10	정릉동 257		연와, 조	26		조장연	257-9			
			새내기, 물의문	1식		"	"			
11	정릉동 257		담장, 대문	1식		"	"			
			담장, 새내기	25		"	"			
12	257-8		"	26		김영준	257-8			
13	260-97		"	39		조용구	260-97			
14	-2		"	60		민병찬	258-6			
15	-3		연와, 조	131		홍영일	260-3			
16	-4		연와, 물의문	26		최영일	4			
			담장, 새내기	1식		"	"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실제이용 상황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7	정릉동 260-5		연와조 세멘기와	34㎡		조영수	정릉동 260-5				
18	5		"	42		"	"				
19	-6		"	25		강진성	-6				
			철대문, 담장	1식		"	"				
20	258-11		세멘력돌 스라브	3		김수인의2인	202-38	안재준 김정순	254-77 202-38		
21	"		"	4		"	"	"	"		
22	358-13		연와조 세멘기와	10		김수인	"				
23	254-10		연와조 세멘기와	6		김순덕	254-10				
24	-206		담장, 철대문	1식		박남필	-206				
25	260-98		담장, 철대문	1식		윤경자	260-98				

◎강동구고시제25호

도시계획시설(도로)실시계획

- 서울시 고시 제536호(89.12.19)로 도시계획 시설(도로)변경 결정되고 강동구 고시 제5호(90.3.16)로 지적 승인된 명일동 166-산 48번지간 도로 개설공사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5조에 따라 실시 계획인가 하였고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 관계 도서는 강동구청 토목과, 건설관리과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90. 8. 21

강 동 구 청 장

- 사업시행구간 : 명일동 166-산 48번지간
- 사업명 : 명일동 166-산 48번지간 도로 개설공사
- 사업시행규모 : 도로개설 B=12m L=400m
- 사업시행자 : 강동구청장
- 사업착수일 및 준공예정일 : 실시 계획 인가일로부터 2년간
- 수용할 토지 수용자와 토지 수용법 제4조 3항의 규정예외의 관계인 : 별첨

토 지 및 물 건 조 서

일련 번호	소 재 지 지 번	기 목 (물건의 종류)	지 적 (구조및 규격)	면적 (수량)	실 제 이용상황	소 유 자		판 제 인			비 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의종류	
1	상일동166-1	학교	10.1			학교법인 한양학원	강동구 상일동 166				
2	" 산46-4	임야	266			홍 순 의	용산구청파동1/189-70	전철영 전부영	길동392-10 성동중로동129-14	가등기 "	
3	" 산43-2	"	726			천 인 동	도봉구 미아동 8-101				
4	" 산43-1	"	393			국 유 지					
5	" 산42-1	"	15			천 인 동	도봉구 미아동 8-101				
6	" 산44-1	"	21			임길순외6인	동대문구 송인동 178				
7	" 51-1	"	448			지길원외5인	중구 통학동 1563-1				
8	" 산36-1	"	525			서울특별시					
9	" 36-2	"	158			김 영 부	중구 행림동 35-1				
10	" 165-2	도로	85			강봉구청					
11	" 264-7	"	87			서울특별시					
12	" 266-1	"	225			"					
13	" 267-1	"	103			강동구청					
14	" 266	"	562			"					
15	" 163	"	314.9			서울특별시					
16	" 157	"	497			"					
17	" 161-210	대지	2			임우식외6인	서초구 방배동 339- 173 덕천주빌 7-101				
18	" 161-202	"	10			"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물건의 종류)	지적 (구조및 규격)	면적 (수량)	실제 이용상황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종류	
19	상일동161-203	대지	43			임우식의6인	서초구 방배동 539-173 덕진주택7-101				
20	" 161-204	"	4			"	"				
21	" 161-205	"	4			최종두	강동구 상일동283-6				
22	" 161-206	"	21			이경남	"				
23	" 161-207	"	17			김두권의1인	동대문구신설동92-5				
24	" 161-208	"	19			정운수	강동구 명일2동 243-5				
25	" 161-209	"	13			임우식의6인	서초구 방배동 539-173 덕진주택 7-101				
26	" 161-210	"	82			박준서	강동구 상일동 주흥(아) 407동 106호				
27	" 161-211	"	26			박동흙	강남구 개포동 주흥(아) 12-402				
28	" 161-212	"	9			임우식의6인	서초구 방배동 539-173 덕진주택 7-101				
29	" 161-213	"	2			기중호	강동구 상일동 210				
30	" 161-214	"	9			김석진의1인	강동구 상일동 주흥(아) 310-205				
31	" 161-215	"	39			문중희	강동구 하일동 360-92				
32	" 161-216	"	2			김병희	대구격렬시립서구상인동 797주공(아)308-1405호				
33	" 161-217	"	2			김소곤	강남구 대치동 미도(아)110-803호				
34	" 161-218	"	2			김경일	충남 홍성군 홍성읍 남장 리344 (아)A동 131호				
35	" 161-219	"	1			전재증	성동구 성우1가 656-1235 나동 102호				
36	" 161-153	"	40			정영자	강남구 일원동 620				
37	" 161-154	"	17			임경석	중랑구 상봉2동 124-38				

33-28

제1518호

시

년

1990. 10. 10

1971

<p>◎강동구고시제29호</p> <p>도시계획시설(도로)실시계획인가</p> <p>1. 건설부 고시 제198호(71.4.7)로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되고 서울시 고시 제208호(73.12.26)로 지적 승인된 강동대로-시계간 도로 확장 공사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5조에 따라 실시 계획 인가하였기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p> <p>2. 관계 도서는 강동구청 토목과, 건설관리과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p>		<p>1990. 9. 17</p> <p>강 동 구 청 장</p> <p>1) 사업시행기간 : 둔촌동 229-산 31</p> <p>2) 사 업 명 : 강동대로-시계간 도로 확장공사</p> <p>3) 사업시행규모 : 도로확장 B=25m L=120m</p> <p>4) 사업시행자 : 강동구청장</p> <p>5) 사업착수일 및 준공예정일 : 실시 계획인가일로부터 2년간</p> <p>6) 수용할 토지수용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 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 : 별 권</p>		
<p>로 지 조 서</p>				
지 번	지목	면 적	주 소	성 명
둔촌동 229-9	답	13㎡	도봉구 쌍문동 409-29	이성호
" 229-8	답	15㎡	시 유 지	
" 218-1	전	221㎡	"	
" 산31-1	임	1,208㎡	"	
" 229-1	답	548㎡	"	
" 산31-6	임	59㎡	영등포구 여의도동 1-681 서울(아)1동 609호	이홍조
" 산31-7	임	37㎡	"	
" 산31-8	임	26㎡	시 유 지	
<p>◎중랑구 고시 제73호</p> <p>도시계획사업(도로개설)실시계획인가</p> <p>1.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화동 154-82의 2 필지에 대하여 중랑구 공고 제128호(90.9.21)로 도시계획사업(도로개설)실시계획 공람 공고를 한바.</p> <p>2. 도시계획법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인가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p>		<p>3. 관계도서는 중랑구청 토목과 및 건설관리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p> <p>1990. 10. 8</p> <p>중 랑 구 청 장</p> <p>가.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화동 154-54~148-54호</p> <p>나.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 사업(도로개설)시행</p> <p>명칭 : 중화동 154-54~148-54호간</p>		

도로개설공사

다. 사업의 규모: 도로개설 폭 6미터, 연장 20미터

라. 사업시행자: 중랑구청장

바. 사업착공 및 준공년월일: 인가일로부터 180일간

카. 사용 또는 수용할 재산: 별첨

사. 토지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 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 주소, 성명: 별첨

●중랑구고시제74호

도시계획사업(도로개설)실시계획인가

1.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화동 23-1의 2 필지에 대하여 중랑구 공고 제130호(90.9.21)로 도시계획사업(도로개설) 실시계획 공람 공고를 한바

2. 도시계획법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인가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중랑구청 토목과 및 건설관리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90. 10.

중랑구청장

가. 사업시행지: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화동 23-1~18-3간

나. 사업의 종류: 도시계획사업(도로개설) 시행

명칭: 중화동 23-1

다. 사업의 규모: 도로개설 폭 6미터, 연장 45미터

라. 사업시행자: 중랑구청장

마. 사업착공 및 준공년월일: 인가일로부터 12개월

바. 사용 또는 수용할 재산: 별첨

사. 토지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 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 주소, 성명: 별첨

●성북구고시제78호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취소

주택건설 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민영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하고, 동법시행령 제32조의5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990. 10.

성북구청장

- 다 음 -

- 1. 사업명: 민영주택 건설사업
- 2. 사업주체: 신한주택 대표 우경선의 1
- 3.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규모
가. 위치: 성북구 길음동 산 75-21의 7필지

나. 면적: 4,533㎡

다. 규모: 아파트 5층 2동 60세대

라. 사업시행기간: 1989.7.~1990.11

4. 취소사유: 사업자 변경으로 인한 취소원 제출

5. 취소일: '90.10.8

●송파구고시제118호

도시계획시설(도로)지적승인

1. 송파구 고시 제38호(90.9.25)로 민영주택 건설 사업계획 승인에 따라 변경결정된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적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송파구청 도시정비과 및 시

인봉사실, 송파2동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90. 10. 송 파 구 청 장

가. 도시계획시설(도로)지적승인조서

구분	등급	구별	폭원 (m)	연장 (m)	시 점	중 점	비고
기정	소토	2	8	60	송파2동 184	송파2동 171-8	
변경	소토	2	8	60	"	"	폐지

나. 도면 : 별첨도면 표시와 같음(생략)

구 공 고

◎강남구공고제84호

관인재교부공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관인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관인 재교부를 동 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0. 10.

강 남 구 청 장

1. 관인사용개시일 : 1990년 10월 15일 09 : 00

2. 승인인영

인	제 교 부		폐 기	
				
공인인영	강남구 개포2동장직인(민원사무전용) 및 계인			

사 령

공무 국외여행 명령 통보

여 행 자				여 행 국	여행기간	여행정비	여 행 목 적
소 속	직 명	성 명	성 명				
환경녹지국	이사관	조 남 호	델버른	90.10.14 -10.21 (8일간)	시 비 (3,051불)	세계 대도시협회 제3차 총회 메트로폴리스 '90참가	

여 행 자			여 행 국	여 행 기간	여 행 경비	여 행 목 적
소 속	지 명	성 명				
국제교류과	지방행정 사무관	정 순 구	델버른	90.10.14 -10.23 (10일간)	시 비 (3,356불)	세계 대도시협회 제3차 총회 베트남도시 '90참가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사령

©1990년 9월 28일자 기술직 공무원 직무대리 발령 령 제120호

성 명	발 령 사 항	현 부 서	현 직 위	현 직 급
전동진	강서수도사업소 누수방지과장 직무대리	강서수도사업소	공무1계장	지방수도토목기사

5급기술직 공무원 전보 령 제119호

성 명	발령부서	발령직위	발령직급	현 부 서	현 직 위	현 직 급
이상윤	은평수도 사업소	공무과장	지방수도 토목기사	은평수도사업소	공무과장직대	지방수도토목기사
박인석	강남수도 사업소	누수방지 과 장	"	강남수도사업소	누 수 방 지 과 장 직 대	"
최창희	생산관리 부	시설계획 과 장	"	생 산 관 리 부	시 설 계 획 과 장 직 대	"
문설길	강동수도 사업소	누수방지 과 장	"	강동수도사업소	누 수 방 지 과 장 직 대	"
이기배	강서수도 사업소	공무과장	"	강서수도사업소	공무과장직대	"
김성정	영등포수 도사업소	공무과장	"	영등포수도사업소	공무과장직대	"
황선문	중부수도 사업소	공무과장	"	중부수도사업소	공무과장직대	"
윤석우	급수부	누수방지 과 장	"	급 수 부	누 수 방 지 과 장 직 대	"
이세진	북부수도 사업소	누수방지 과 장	"	북부수도사업소	누 수 방 지 과 장 직 대	"
이재유	서부수도 사업소	공무과장	"	서부수도사업소	공무과장직대	"
이기준	급수부	급수장치 과 장	"	급 수 부	급 수 장 치 과 장 직 대	"

성명	발령부서	발령직위	발령직급	현부서	현직위	현직급
심진섭	영등포수도사업소	누수방지과장	지방수도토목기과	영등포수도사업소	누수방지과장직대	지방수도토목기과
편양현	은평수도사업소	누수방지과장	"	은평수도사업소	누수방지과장직대	"
황희석	동부수도사업소	공무과장	"	동부수도사업소	공무과장직대	
유기돈	중부수도사업소	누수방지과장	"	중부수도사업소	누수방지과장직대	"
노창수	서부수도사업소	누수방지과장	"	서부수도사업소	누수방지과장직대	"
한복연	수도자재사업소장		지방기계기과	탄천하수처리장	수처리과장	지방기계기과
상수도사업본부장						